

『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평생교육원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강동문화복지회관 ‘사용자의 책임’ 조항 일부 개정(안 제17조제2항)
- 강동문화복지회관 ‘위탁 운영’ 조항 신설(안 제2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강동문화복지회관 시설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, 복지회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안임.
- 검토 결과,
 - 손해배상 주체를 사용자에서 이용자까지 확대하여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사용자 및 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